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888
------------	-------

발의연월일 : 2018. 4. 4.

발의자 : 소방훈 · 김영호 · 조승래

김민기 · 김경진 · 이용호

진선미 · 인재근 · 김영진

강창일 · 김성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소방공무원은 화재 및 각종 사고·재난대응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지방행정기관과는 상이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방 조직의 특수성 및 중앙과 지방의 연대성을 명확히 하는 소방 관련 조직규정이 미흡하였음.

이에,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중앙과 지방이 일원화된 신분과 조직체계로 움직이게 하는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개정안에서는 소방업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정원 관리를 국가에서 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며, 소방청과 시·도소방청의 임무와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두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시·도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시·도소방청장”으로 함(안 제2조제4호).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2조의2).
- 다. 소방업무를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2조의3).
- 라.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두고, 소방청에 소방청장을 두며, 소방청장은 소방총감으로 보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 마. 소방청장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청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 바. 시·도에 시·도지사 직속으로 시·도소방청을 두고, 시·도소방청장은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 구역의 소방사무를 총괄하도록 하며, 시·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소방본부장””을 ““시 · 도소방청장””으로, “화재의 예방 · 경계 · 진압 · 조사 및 구조 · 구급 등의 업무”를 “제2조의3의 소방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소방본부장”을 “시 · 도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2조의3(소방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한다.

1. 화재의 예방 · 경계 · 진압 및 조사
2. 재난 · 재해 및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의 현장대응, 구조 · 구급 등 국민의 생명 ·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
3. 소방대상물 등의 안전관리
4. 소방시설업 및 소방산업의 지도 · 감독
5. 소방산업 및 소방기술의 진흥

6. 생활안전사고 수습 및 처리

7. 소방안전교육 및 홍보

8. 그 밖의 소방안전에 관한 사항

제3조의 제목 “(소방기관의 설치 등)”을 “(소방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둔다.

② 소방청에 소방청장을 두며, 소방청장은 소방총감으로 보한다.

제3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방청장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방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을 지휘·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청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④ 소방청에 차장을 두며, 차장은 소방정감으로 보한다.

⑤ 소방청의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와 공무원의 정원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시·도소방청) ① 소방에 관한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직속으로 시·도소방청을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소방

대상물 및 그 밖의 소방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의 시·도에 2개의 시·도소방청을 둘 수 있다.

② 시·도소방청에 시·도소방청장을 두며, 시·도소방청장은 소방정감·소방감 또는 소방준감으로 보한다.

③ 시·도소방청장은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 구역의 소방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한다.

④ 시·도소방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장을 둘 수 있으며, 차장은 시·도소방청장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시·도소방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소방서장은 시·도소방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 구역의 소방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⑥ 시·도소방청장 및 소방서장의 소관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대응단,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구급대, 소방정대 또는 119지역대 등을 두며, 그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시·도소방청 및 소방서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제1항 중 “소방본부장”을 “시·도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소방본부장”을 각각 “시·도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1조의2제4항 본문 중 “소방본부장”을 “시·도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소방본부장”을 각각 “시·도소방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소방본부”를 각각 “시·도소방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소방본부장”을 “시·도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8호 중 “소방청장·소방본부장”을 “소방청장, 시·도소방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소방본부장”을 각각 “시·도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소방본부장”을 “시·도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소방본부장”을 “시·도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청장·소방본부장”을 “소방청장, 시·도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청장·소방본부장”을 “소방청장, 시·도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본부장”을 각각 “시·도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7조의5제1항 중 “소방본부”를 “시·도소방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소방본부”를 “시·도소방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본부장”을 “시·도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소방본부장”을 각각 “시·도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소방본부장”을 각각 “시·도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 “소방본부장”을 각각 “시·도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소방본부장”을 각각 “시·도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소방본부장”을 “시·도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소방본부장”을 “시·도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1조 전단 및 후단 중 “소방본부장”을 각각 “시·도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소방본부장”을 “시·도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3조 중 “소방본부”를 “시·도소방청”으로 한다.

제49조 중 “소방본부장”을 “시·도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6조제2항 중 “소방본부장”을 “시·도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7조제2항 중 “소방본부장”을 “시·도소방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 <u>소방본부장</u> ”이란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에서 <u>화재의 예방 · 경계 · 진압 · 조사 및 구조 · 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u> 을 말한다.	4. “ <u>시 · 도소방청장</u> ”----- ----- ----- ----- -----제2조의3의 <u>소방업무</u> ----- -----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 <u>소방대장</u> ”(消防隊長)이란 <u>소방본부장</u>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6. ----- <u>시 · 도소방청장</u> ----- ----- ----- ----- -----.
<u><신 설></u>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화재,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u>

<신 설>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 등) ①
시 · 도의 화재 예방 · 경계 · 진
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 · 홍
보와 화재, 재난 · 재해, 그 밖
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
구급 등의 업무(이하 “소방업
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소방

제2조의3(소방업무)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
무를 공동으로 수행한다.

1. 화재의 예방 · 경계 · 진압
및 조사
2. 재난 · 재해 및 그 밖에 위
급한 상황에서의 현장대응,
구조 · 구급 등 국민의 생명
·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
3. 소방대상물 등의 안전관리
4. 소방시설업 및 소방산업의
지도 · 감독
5. 소방산업 및 소방기술의 진
흥
6. 생활안전사고 수습 및 처리
7. 소방안전교육 및 홍보
8. 그 밖의 소방안전에 관한
사항

제3조(소방청) ①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
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둔다.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소방청에 소방청장을 두며, 소방청장은 소방총감으로 보한다.

③ 소방청장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방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소속 기관의장을 포함한다)을 지휘·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청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④ 소방청에 차장을 두며, 차장은 소방정감으로 보한다.

⑤ 소방청의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와 공무원의 정원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시·도소방청) ① 소방에 관한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

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시·
도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
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
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직속으로 시·도소방청
을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
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소방
대상물 및 그 밖의 소방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의 시·도에 2개
의 시·도소방청을 둘 수 있
다.

② 시·도소방청에 시·도소방
청장을 두며, 시·도소방청장
은 소방정감·소방감 또는 소
방준감으로 보한다.

③ 시·도소방청장은 시·도지
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
구역의 소방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 및 소방서장을 지
휘·감독한다.

④ 시·도소방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장을 둘
수 있으며, 차장은 시·도소방
청장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시·도소방청장이 부

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소방서장은 시·도소방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 구역의 소방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⑥ 시·도소방청장 및 소방서장의 소관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대응단,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119구급대, 소방정대 또는 119지역대 등을 두며, 그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시·도소방청 및 소방서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4조(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신속한 소방활동(소방업무를

제4조(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① -----시·도소방청장-----

<p>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정보의 수집 · 분석과 판단 · 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 ·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11조(소방업무의 응원) ① <u>소방본부장</u>이나 소방서장은 소방 활동을 할 때에 긴급한 경우에는 이웃한 <u>소방본부장</u>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업무의 응원(應援)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11조(소방업무의 응원) ① <u>시 · 도소방청장</u>이나 <u>시 · 도소방청장</u>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 요청을 받은 <u>소방본부장</u> 또는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시 · 도소방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소방업무의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u>소방본부장</u>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p>	<p>③ 시 · 도소방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④ (생략)</p>	
<p>제11조의2(소방력의 동원) ① ~</p>	<p>제11조의2(소방력의 동원) ① ~</p>

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火災警戒地區)로 지정할 수 있다.

1. ~ 7. (생 략)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생 략)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

1. ~ 7. (현행과 같음)

8. -----
-----소방청

장, 시·도소방청장-----

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소방청장-----

-----.

④ 시·도소방청장-----

있다.	-----.
⑤ <u>소방본부장</u> 이나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u>시 · 도소방청장</u> ----- ----- ----- ----- -----.
⑥ (생 략) 제14조(화재에 관한 위험경보) <u>소방본부장</u> 이나 소방서장은 「기상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상기상(異常氣象)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을 때에는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화재에 관한 위험경보) <u>시 · 도소방청장</u> ----- ----- ----- ----- ----- -----.
제16조(소방활동) ① 소방청장, <u>소방본부장</u>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소방활동) ① ----- <u>시 · 도소방청장</u> ----- ----- ----- ----- ----- ----- -----.
② (생 략)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소방청장· <u>소방본부장</u>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u>소방청장</u> , <u>시 · 도소방청장</u> ----- -----

<p>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 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p>	<p>----- ----- ----- ----- ----- -----. -----.</p>
<p>1. ~ 6. (생 략) ② · ③ (생 략)</p>	<p>1.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① <u>소 방청장 · 소방본부장</u> 또는 소방 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 전 및 위험제거 활동(화재, 재 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 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다음 각 호의 활동 (이하 “생활안전활동”이라 한 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p>	<p>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① <u>소 방청장, 시 · 도소방청장</u> ----- ----- ----- ----- ----- ----- ----- ----- ----- ----- ----- -----. -----.</p>
<p>1. ~ 5. (생 략) ② · ③ (생 략)</p>	<p>1.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7조(소방교육 · 훈련) ① 소방 청장, <u>소방본부장</u> 또는 소방서 장은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 · 훈 련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17조(소방교육 · 훈련) ① ----- ---<u>시 · 도소방청장</u> ----- ----- ----- ----- ----- ----- ----- -----. -----.</p>
<p>② 소방청장, <u>소방본부장</u> 또는</p>	<p>② -----<u>시 · 도소방청장</u>---</p>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①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煙幕) 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6. (생략)

제24조(소방활동 종사 명령)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1. ~ 6. (현행과 같음)

<p>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p> <p>④ (생략)</p> <p>제26조(피난 명령) ① <u>소방본부장</u>,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② <u>소방본부장</u>,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관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27조(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 조치) ① <u>소방본부장</u>,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방용수 외에 댐·저수지 또는 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거나 수도(水道)의 개폐장</p>	----- ----- ----- -----. <p>④ (현행과 같음)</p> <p>제26조(피난 명령) ① <u>시·도소방청장</u> ----- ----- ----- ----- ----- ----- ----- ----- -----. <p>② <u>시·도소방청장</u> ----- ----- ----- ----- ----- ----- ----- -----. <p>제27조(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 조치) ① <u>시·도소방청장</u> ----- ----- ----- ----- ----- ----- ----- ----- -----</p> </p></p>
--	--

